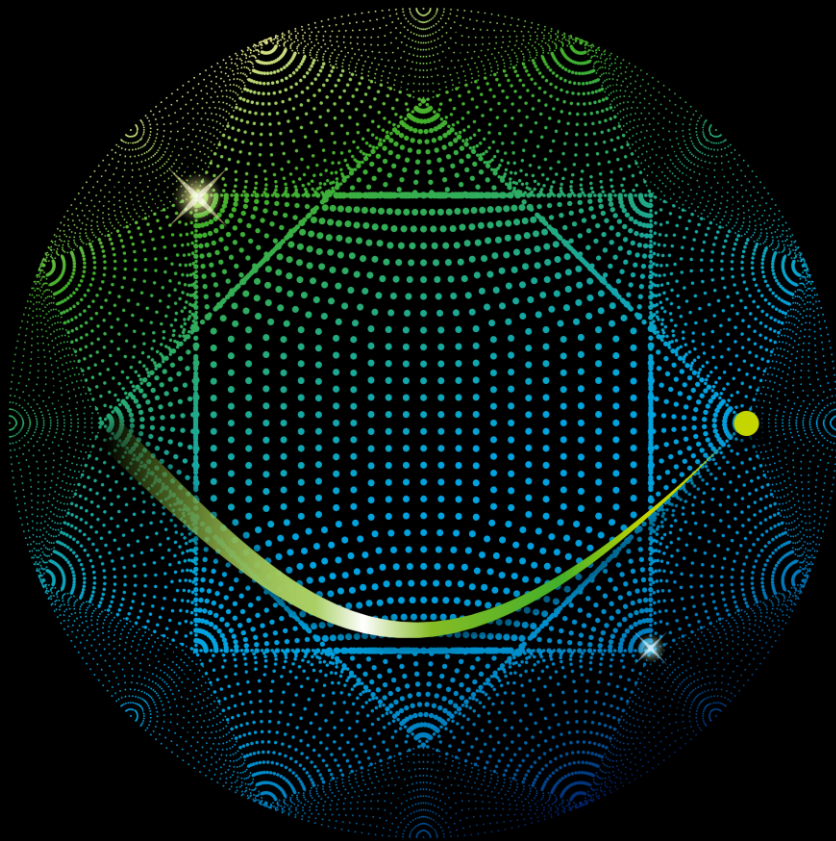


## TAX & LEGAL ALERT

정부의 제132/2020/NĐ-CP호 시행령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한 제20/2025/NĐ-CP호 시행령 업데이트: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의 세무 관리에 관한 규정

2025년2월



## 정부의 제132/2020/NĐ-CP호 시행령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한 제20/2025/NĐ-CP호 시행령 업데이트: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의 세무 관리에 관한 규정

2025년 2월 10일, 정부는 제20/2025/NĐ-CP호 시행령(이하 "제20호 시행령")을 공포하였으며, 이는 2020년 11월 5일에 공포된 제132/2020/NĐ-CP호 시행령("제132호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의 세무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제20호 시행령은 제132호 시행령의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	수정 보완사항	Deloitte의 의견
1.	<b>제20호 시행령 제1조 1항은 제132호 시행령 제5조 2항 (type d)을 수정 및 보완하여 신용기관과 관련된 특수관계 유형(type d)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다.</b>	이번 개정은 type d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출자, 운영, 또는 통제 관계가 없는 경우 기업이 신용기관과의 대출 또는 보증 거래를 진행하더라도 특수관계 거래로 간주되지 않도록 명시한다. 이는 '거래의 본질이 형식을 결정한다'는 원칙을 반영하여, 단순한 대출·보증 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규정 준수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b>제20호 시행령 제1조 1항은 제132호 시행령 제5조 제2항 (type k)을 수정 및 보완하여 기타 특수관계 유형(k항)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다.</b>	이번 개정은 기타 특수관계 유형(type k)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한다. 이에 따라, 독립채산제 지점도 특수관계자로 신고 대상이 되며, 이전가격 규제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3.	<b>제20호 시행령 제1조 1항은 제132호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type m)을 추가하여 신용기관과 관련된 특수관계 유형을 보완한다.</b>	이번 개정은 신용기관의 특수관계 유형(type m)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자회사, 지배회사, 또는 관계회사와의 특수관계를 '신용기관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한다. 이에 따라, 신용기관의 특수관계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신용기관법을 참조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다.
4.	<b>제20호 시행령 제3조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과세연도에서 공제되지 않은 이자비용 및 아직 이월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b>	이번 개정은 제132호 시행령 제5조 제2항 d점에서 규정한 신용기관과의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2024년 이전 과세연도의 공제 불가 대출이자 비용의 이월 규정을 명확히 규정한다. 이 개정은 납세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과세연도에서 공제되지 않은 대출이자 비용이 계속해서 배분되고, 이후 과세연도로 이월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특히, 기업이 2024년 과세연도 동안 특수관계 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2023년 과세연도 말까지 이월되지 않은 공제 불가 대출이자 비용은 제132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남은 과세연도 동안 균등하게 배분되어 이월된다. 기업이 2024년 과세연도에 특수관계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공제되지 않은 대출이자 비용 및 아직 이월되지 않은 금액은 제132호 시행령 제16조 제3항 b점의 규정을 따른다. 즉, 다음 과세연도의 공제 가능한 대출이자 비용 총액이 '과세연도 내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순이익 + 대출이자 비용(예금이자 및 대출이자 차감 후) + 감가상각비'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자 비용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 정부의 제132/2020/NĐ-CP호 시행령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한 제20/2025/NĐ-CP호 시행령 업데이트: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의 세무 관리에 관한 규정

#	수정 보완사항	Deloitte의 의견
5.	제20호 시행령 제1조 2항은 제132호 시행령 제21조 제2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도시 및 지방의 인민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부처 및 부처급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세무당국의 요청에 따라, 신용기관과 특수관계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의 세무 관리 목적을 위해 신용기관의 특수관계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국가은행의 협조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다.
6.	제20호 시행령 제2조는 제132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1 -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 거래에 관한 정보"를 본 시행령에 첨부된 새로운 "부록 1 -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 거래에 관한 정보"로 대체하였다.	제20호 시행령에 첨부된 개정 부록 1은 본 개정 시행령에 따라 수정 및 업데이트된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 목적에 맞게 조정되었다.
7.	<b>발효일:</b> 제20호 시행령은 2025년 3월 27일부터 발효되며, 2024년 법인세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2024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제20호 시행령은 납세자가 특수관계 신고를 검토 및 수정하고, 2024년 과세연도부터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도록 적시에 도입된 것으로 평가된다.



## Contact us

### Vietnam Korean Service Group

Deloitte Global Korean Services Group(KSG)의 일원으로서, 베트남 KSG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확장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및 언어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 세무, 재무 자문 및 컨설팅을 포함한 폭넓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한국 기업들의 요구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상주하는 한국어 구사 전문가를 포함한 전담 팀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한국 기업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 회계사**  
KSG Leader – HCMC office  
+84 901 197 014  
[keunslee@deloitte.com](mailto:keunslee@deloitte.com)



**류경석 회계사**  
Tax Director – Hanoi office  
+ 84 96 227 8254  
[kyungryu@deloitte.com](mailto:kyungryu@deloitte.com)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purposes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Contact us



**Bui Tuan Minh**  
**Country Tax & Legal Lead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mailto:mbui@deloitte.com)



**Thomas McClelland**  
**Tax Partn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mailto: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mailto:t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mailto: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mailto: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mailto: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mailto: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mailto:quantat@deloitte.com)



**Vu Thu Ha**  
**Tax Partner**  
+84 24 710 50024  
[hatvu@deloitte.com](mailto:hatvu@deloitte.com)



**Dang Mai Kim Ngan**  
**Tax Partner**  
+84 28 710 14351  
[ngandang@deloitte.com](mailto:ngandang@deloitte.com)



**Tran Quoc Thang**  
**Tax Partner**  
+84 28 710 14323  
[qthang@deloitte.com](mailto:qthang@deloitte.com)



**Pham Quynh Ngoc**  
**Legal Partner**  
+84 24 710 50070  
[ngocpham@deloitte.com](mailto:ngocpham@deloitte.com)

## Office

### Hanoi Office

15<sup>th</sup>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 Ho Chi Minh City Office

18<sup>th</sup>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  
69<sup>F</sup>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purposes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is a member firm of Deloitte Global. Deloitte Asia Pacific members and affiliates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 more than 100 cities in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In member countries, business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dependently by separate legal entities.

####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document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and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therefore, no DTTL company, or any of its affiliates or subsidiaries and their employees shall be deemed to, within the scope of the content of this document, provide services or give opinions, professional advice for readers. This document does not constitute advice to the reader and shall not affect other advice provided by any employee of the Deloitte Foundation. The information presented in this document does not apply to the individual cases of the enterprise.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ial or business situation, you should consult a professional adviso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made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and no member of the Deloitte Companies Network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s, losses incurred directly or indirectly as a result of the reader’s use, publication, dissemination of, or reliance on this material to act, inaction, or make any decisions.